

등록번호	철도정책과-2377
등록일자	2004. 12. 29
결재일자	2004. 12. 29
공개구분	공개

철도정책 과 장	철도정책 국 장	수송정책 실 장	차 관	장 관
서훈택	김영환	이영환	김희호	김동선

한국철도공사 정관 인가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한국철도공사 정관을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자 합니다.

- 붙임 : 1. 인가사항 및 정관 주요골자 1부.
2. 한국철도공사 정관 전문 1부.
3. 설립위원회 심의내용 1부. 끝.

철 도 정 책 국
철 도 정 책 과

한국철도공사 정관 인가

1. 인가사항

한국철도공사 정관을 별첨과 같이 인가함.

2. 정관 주요골자(본문 48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총 칙

-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둠(제3조)
-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함(제4조)
-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7조)



□ 임원 및 직원

-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함(제8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제10조)
-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함(제17조)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도록 함(제20조)

□ 이사회

-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함(제27조)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제32조)

□ 업 무

-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철도차량과 철도장비의 정비 및 임대사업 등 공사의 사업을 정함(제36조)
- 공사는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7조)

□ 사 채

-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 회 계

-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함(제45조)
- 공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제47조)

□ 부 칙

-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한국철도공사 정관

규정 제 호

2004. 12. .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고,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ailroad Corporation(약칭 KORAIL)이라 표시한다.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출자증권) 공사는 공사에 출자한 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방법) 공사의 광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의

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①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사장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중에서 사장이 제청하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건의가 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관장업무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2조(사장추천위원회) ①공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의 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공사의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직원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과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⑨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⑩공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①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비상임이사**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상임이사가 이사의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장과 계약) 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제15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 등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 내지 제401조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에 의하여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기준 중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의 보수기준에는 사장과의 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 할 수 없다.

제21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3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개방형직위) ①사장은 공사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공사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의 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 면직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5조(대리 · 대행) 사장은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 · 대행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등) ①사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 자문위원 또는 촉탁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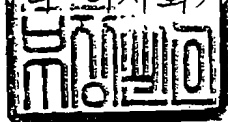


제27조(구성) ①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이사회 의 권한)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경영목표 · 예산 ·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사장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임 및 경영계약안의 작성
12.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3. 사장이 심의요청하거나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 의결의 범위 및 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감사의 출석 및 감사 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관계인의 의견 진술 등)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련되는 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이사는 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사회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이사회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 또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은 서면의 결할 수 있다.

④이사회에서 결론을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사록) 공사는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의사록 사본을 이사 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업 무

제36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역사 및 역세권과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5. 건축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주차장,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업, 광고업 및 음식점업 
7. 철도운영과 관련한 조경사업, 조사연구 및 개발업, 부동산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정보통신사업 및 이비즈니스(e-Business) 사업
9. 임직원 등 철도전문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양성
10. 임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11. 외국철도사업자 및 북한과의 협력사업

12.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7조(외자도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제기관·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제38조(경영목표의 설정) ①공사는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사장은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 채

제39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40조(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정

할 수 있다.

제41조(사채의 금액) 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는 권면액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사채소유자에 대한 우선변제) 공사는 사채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43조(자금차입) ①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해당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년도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제44조(상환계획) 공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45조(회계년도) 공사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46조(예산 및 회계)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경영공시) 공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

하여야 한다.

제48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 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사설립위원회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위원)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

립준비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 날인한다.

2004년 12월 일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 샘터마을 아파트 103동 801호

성명 : 김 시호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 아파트 3동 401호

성명 : 이 영 광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현대 성우 아파트 294동 1104호

성명 : 이 진 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대우 효령 아파트 101동 501호

성명 : 이 광 석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27 한일 아파트 201동 1301호

성명 : 홍 노 봉 기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롯데1차 낙천대아파트 214동 802호

성명 : 최 연 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7-36호

성명 : 정 수 인



설립위원회 심의결과

1. 추진경위

- 2003.12.31 :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 공포
- 2004. 2. 6 :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 구성
- 2004.11.10 : 제5회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정관(안)』 의결

2. 심의결과

- 철도공사 사업에 대하여 수정의결

변경 전	변경 후
제37조(사업) ①공사는 의 사업을 행한다. 1.~3. (생략) 4.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철도연변 개발사업 5.~13. (생략) ② (생략)	제37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3. (변경전과 같음) 4. 철도역사 및 역세권과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5.~13. (변경전과 같음) ② (변경전과 같음)